####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2015~	10
----------	-------	----

제출일자	
제출자	이성복 의원 외 10명

#### 1. 제안이유

○ 거창군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회의규칙을 정비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5분 자유발언 단서규정 신설(안 제33조의2제1항단서)
  - 군정질문이 있는 날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지 아니함
- 나. 5분 자유발언 신청시일 조정(안 제33조의2제2항)
  -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→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
- 다.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규정 신설(안 제33조의2제3항)
  -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의장이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발언을 중지하게 할 수 있음

#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 법령
  - ○「지방자치법」제71조
- 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집행부의견조회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타 사항
  - 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  - 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 - (3) 입법예고 : 해당사항 없음
  - (4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의회 규칙 제 호

##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거창군의회의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의2제1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다만, 군정질문이 있는 날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지 아니한다.

제33조의2제2항 중 "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"를 "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의장은 발언요지 접수 후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발언을 중지하게 할수 있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개 정 안 혂 행 제33조의2(5분 자유발언) ① 의장은 제33조의2(5분 자유발언) ① -----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 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 안과 청원,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(이하"5분 자유 발언" 이라 한다)을 허가 할 수 있다. <신 설> 다만, 군정질문이 있는 날은 5분 자유 발언을 실시하지 아니한다.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-----간략하게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, 발언순서는 신청 순서와 같다. <신 설> ③ 의장은 발언요지 접수 후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허가 하지 아니하거나 발언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.

# 관련법령

□「지방자치법」

**제71조(회의규칙)**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